

정 관

주식회사 비츠로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비트로셀이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VITZROCELL Co., Ltd. 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
2. 수출입업
3. 물품매도 약약서 발행업
4.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관련 설비의 제작 및 설치업
5. 자동화 설비의 설계, 제작, 판매업
6.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7. 자동화 설비의 공사 및 기술용역업
8.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작 및 판매업
9.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작 및 판매업
10.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작 및 판매업
11.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제작 및 판매업
12. 산업설비공사업
13. 전력저장용 기기 제작 및 판매업
14. 전지재료 및 부품 생산 및 판매업
15. 로켓트 추진장치 등 우주항공분야 제품 및 부품 제작 및 판매업
16. 산업폐기물 소각로 등 환경관련 제품 제작 및 판매업
17. 우주항공용 부품, 가속기용 부품, 진공 관련부품과 관련된 과학기자재 제작 및 판매업
18. 플라스마 전력충격 압파쇄장치 제작 및 판매업
19. 가속기장치 등 제작 및 판매업
20.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21. 전기, 전자제어 부품 및 통신장비 도.소매업
22.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23. 위 1항 내지 11항, 13항, 20항 내지 21항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용역업
24. 기타 위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1. 이 회사의 본점을 충청남도 당진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vitzrocell.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 발행한도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5%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비율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⑦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제9조의2 (상환우선주) ① 회사는 제9조의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의한다.

③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⑤ 상환우선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9조의3 (전환우선주) ① 회사는 제9조의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생시에 이사회 결의로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및 그 계산방식등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환으로 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환우선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9조의4 (상환전환우선주) ① 회사는 제9조의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의3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신주의 모집.매출 및 유상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단기의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기관투자자(구조조정조합을 포함한다.) 등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협회등록 또는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위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일반공모증자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명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⑤ 신주발행시 발행가격의 산정은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1에 의하며, 제3자 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1에 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상법 제542조의 8의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6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 542조의 8의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는 제외한다.

③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자기주식 교부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신주 발행 교부인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최소 2년이상 재직 또는 재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6월 이상 2년 이내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는 신주를 인수하거나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보상은 할 수 없다.

제14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5조 (주식의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6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8조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 및 교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각각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참가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참가부사채 및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위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22조의3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 (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4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또한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혹은 서울사무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4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제36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9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 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및 해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약간 명을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으며, 각각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41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하여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 제45조의 1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

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⑧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36조1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43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44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 (이사회 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 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45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③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 (이사회 의 의사록)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8조 (이사 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 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 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또는 임원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9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9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6장 계 산

제50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 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5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